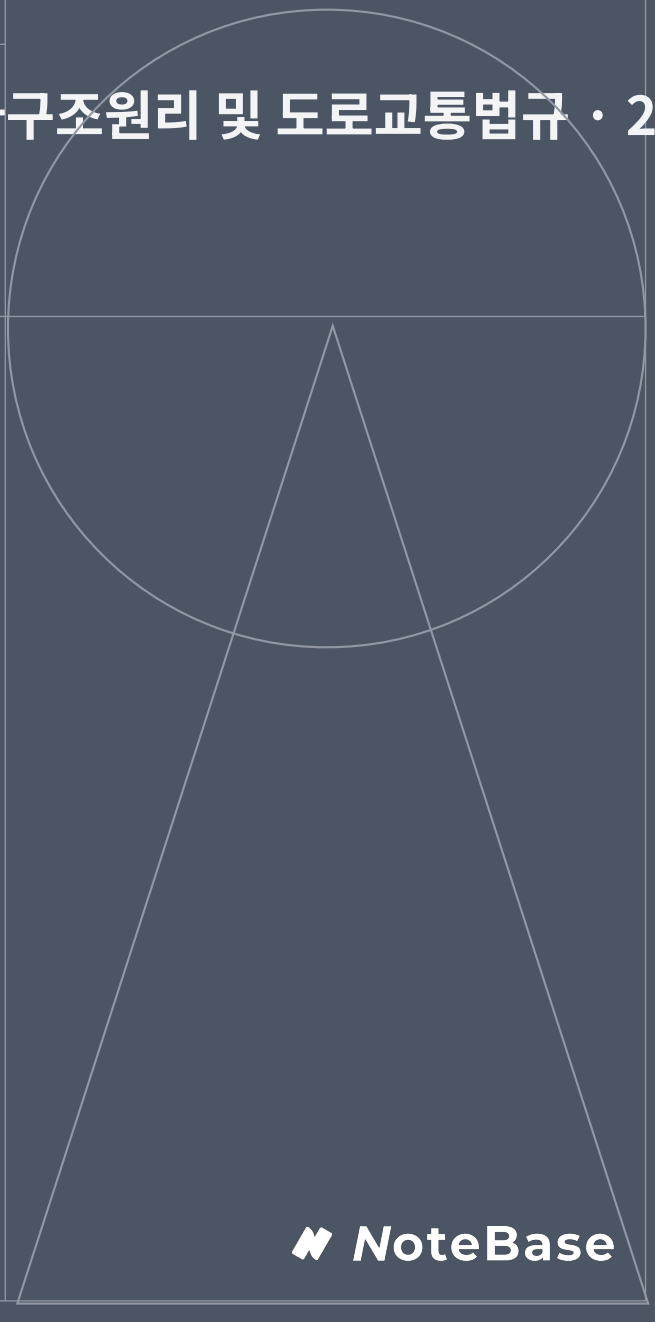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020 ·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020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020 · 6월

문 1. 자동차용 납산 축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해액 부족으로 인한 극판의 노출

② 과다 방전으로 인한 극판의 영구 황산납화

③ 전해액의 비중이 낮은 경우

④ 방전 종지전압 이상의 충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방전 종지전압은 방전을 멈추어야 하는 **하한 전압**이다. 이보다 높은 전압으로 정상 충전하는 것은 수명 단축 원인이 아니며, 이를 **과충전과 혼동하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해액이 부족해 극판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노출 부위가 산화·부식**되어 충전과 방전에 참여하는 부분이 줄어든다. 그 결과 축전지의 용량이 감소하고 수명이 짧아진다.

② O: 납산 축전지는 정상적인 방전 중에도 극판에 황산납이 생기며, 이는 충전할 때 원래의 활물질로 돌아간다. 그러나 과다 방전 후 방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황산납 결정이 커지고 단단해져 **충전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황산납화**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충전 능력과 용량이 감소한다.

③ O: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면 전해액의 황산이 반응에 소모되어 비중이 낮아진다. 따라서 낮은 비중은 방전이나 충전 부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극판의 황산납화가 진행되어 수명이 짧아진다.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구적인 수명 손상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방전 종지전압은 과다 방전을 막기 위해 **방전을 중지하는 하한 전압**이며, 충전을 끝내는 상한 전압이 아니다. 이보다 높은 전압으로 정상 충전하는 것 자체는 수명 단축 원인이 아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종지전압 아래까지 계속 방전하는 과다 방전이나, 정해진 충전 조건을 벗어나는 과충전이다. 과충전은 과열과 전해액 감소, 극판 손상을 일으킨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설명하는 엔진과 행정 조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피스톤이 하강하면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 혼합기가 흡입된다. 흡기밸브가 열리고 배기밸브는 닫힌다.

① 가솔린 엔진 - 흡기 행정
② 가솔린 엔진 - 연소·팽창 행정
③ 디젤 엔진 - 흡기 행정
④ 디젤 엔진 - 연소·팽창 행정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혼합기를 흡입한다는 점이 가솔린 엔진을 가리킨다. 흡기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피스톤이 내려가 혼합기를 빨아들이므로 **흡기 행정**이다.

핵심 풀이

행정의 구분: 피스톤이 하강하면 실린더 내부 공간이 커지고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흡기밸브는 열리고 배기밸브는 닫혀** 있으므로, 열린 흡기밸브를 통해 혼합기가 들어오는 흡기 행정이다.

엔진의 구분: 혼합기는 공기와 연료가 섞인 것이다. 보기처럼 **혼합기를 흡입하는 것은 가솔린 엔진**의 작동 설명이다. 디젤 엔진은 흡기 행정에서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으로 뜨거워진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킨다.

연소·팽창 행정과의 차이: 연소·팽창 행정에서도 피스톤은 하강하지만,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연소가스의 높은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 내린다. 따라서 피스톤의 하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합기의 유입과 밸브의 개폐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 보기의 설명은 가솔린 엔진의 흡기 행정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향핸들의 회전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 자동차는 선회 반지름이 일정한 원운동을 한다. 그러나 일정한 주행속도에서 서서히 가속을 하면 처음의 궤적에서 이탈하여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한다.

① 뉴트럴 스티어링 (neutral steering)
② 오버 스티어링 (over steering)
③ 아웃사이드 스티어링 (out-side steering)
④ 언더 스티어링 (under steering)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조향핸들의 회전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속도를 높였을 때, 선회 반지름이 커져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언더 스티어링**이다. 핸들을 돌린 정도에 비해 자동차가 덜 돌아가는 특성이다.

개념 구분

판단 기준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를 고정하고 속도를 높일 때의 선회 반지름 변화**이다. 보기에서는 자동차가 처음의 원 궤적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지므로 선회 반지름이 커진다. 이는 조향한 만큼 충분히 선회하지 못하는 언더 스티어링에 해당한다. 같은 반지름의 원 궤적을 유지하려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조향각을 더 크게 해야 하는 특성이다.

언더 스티어링과 달리, **오버 스티어링은 선회 반지름이 작아지는** 특성이다. 같은 조향각에서 속도를 높이면 더 급하게 돌아 안쪽으로 파고드는 경향을 보인다.

뉴트럴 스티어링은 같은 조건에서 속도가 변해도 선회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다.

NoteBase

문 4. 캠각(cam angle)이 크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점간극이 작아진다.

② 점화시기가 빨라진다.

③ 1차 전류가 커진다.

④ 점화코일이 발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캠각이 커지면 접점이 닫혀 있는 구간이 길어지고, 접점간극이 작아져 접점이 열리는 시점이 늦어진다. 점화는 접점이 열려 1차 전류가 차단될 때 일어나므로, 점화시기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늦어진다**.

선지별 해설

접점식 점화장치에서 캠각은 단속기 접점이 닫혀 있는 동안 배전기 캠이 회전한 각도이다. 접점이 닫히면 점화코일의 1차 권선에 전류가 흐르고, 접점이 열리면 1차 전류가 차단되면서 2차 권선에 높은 전압이 유도되어 점화가 이루어진다.

① O: 접점의 최대 벌어짐인 **접점간극이 작을수록** 접점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힌다. 따라서 접점이 닫혀 있는 회전각인 캠각이 커진다.

② X: 접점간극이 작아져 캠각이 커지면 캠이 접점을 여는 시점이 늦어진다. 이에 따라 1차 전류가 차단되는 시점도 늦어지므로, 다른 점화시기 조정 조건이 같다면 점화시기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늦어진다**.

③ O: 1차 권선의 전류는 접점이 닫힌 순간 곧바로 최댓값에 이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한다. 같은 회전수에서 캠각이 커지면 **1차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져** 전류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통전으로 전류가 포화값에 이르면 더 이상 계속 커지지는 않는다.

④ O: 캠각이 커지면 1차 권선의 통전 시간이 길어지고 전류에 의한 발열이 증가한다. 따라서 캠각이 지나치게 크면 **점화코일이 과열**될 수 있다.

NoteBase

문 5. 타이어 규격이 <보기>와 같을 때 타이어 높이에 가장 가까운 값은?

<보기>
235/55 R 17 103 W

① 12cm
② 13cm
③ 14cm
④ 15cm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편평비 55는 **타이어 높이가 단면 폭의 55%**라는 뜻이다. 단면 폭 235 mm에 적용하면 높이는 129.25 mm, 즉 12.925 cm이므로 약 13 cm이다.

계산 과정

규격 235/55에서 235는 단면 폭 235 mm를, 55는 편평비 55%를 나타낸다. 편평비는 **단면 폭에 대한 단면 높이의 비율**이다. 여기서 구하는 타이어 높이는 림에서 타이어 바깥쪽까지의 단면 높이이다.

단면 폭을 B, 단면 높이를 H라 하면 편평비의 정의에 따라 $H = B \cdot \frac{55}{100}$이다. 따라서 $H = 235 \cdot \frac{55}{100} = 129.25$ mm이다. 이 값은 타이어 한쪽 옆면의 높이를 뜻한다.

선택지의 단위는 cm이므로 mm를 cm로 바꾼다. 1 cm = 10 mm이므로 129.25 mm = 12.925 cm이다. 이에 가장 가까운 값은 ②의 13 cm이다.

NoteBase

문 6. 시동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동 장치는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와 플라이휠(flywheel) 또는 드라이브 플레이트(drive plate)로 구성되어 있다.

② 스타터 모터에서 피니언 기어의 회전축 방향으로의 이동은 마그네틱 스위치(솔레노이드 스위치로도 표기)에 의해 이뤄진다.

③ 시동 걸린 엔진의 회전이 스타터 모터를 파손하지 않도록 언더러닝 클러치(underrunning clutch)를 사용한다.

④ 시동에는 저속의 강한 힘이 필요하므로 스타터 모터는 감속 기어를 거쳐 피니언 기어에 동력을 전달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언더러닝 클러치'는 **오버러닝 클러치(overrunning clutch)**로 고쳐야 한다. 이 클러치는 시동 후 엔진 쪽 회전이 스타터 모터를 고속으로 끌고 돌리지 않도록 동력 전달을 차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스타터 모터가 만든 회전력을 플라이휠 또는 드라이브 플레이트에 전달하여 엔진을 처음 돌린다. 피니언 기어가 이들 바깥둘레의 **링 기어와 맞물려** 크랭크축을 회전시키는 구조이다.

② O: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력으로 플런저가 움직인다. 이 힘이 피니언 기어를 **회전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엔진의 링 기어와 맞물리게 한다. 시프트 레버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레버를 거쳐 이 힘이 전달된다.

③ X: 엔진이 시동된 뒤 스타터 모터의 과속과 파손을 막는 장치는 **오버러닝 클러치(overrunning clutch)**이다. 시동 중에는 스타터 모터의 회전력을 피니언에 전달하지만, 시동 후 엔진에 의해 피니언이 더 빠르게 돌면 클러치가 공회전하여 그 회전력이 모터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언더러닝 클러치'를 '오버러닝 클러치'로 고쳐야 한다.

④ O: 시동할 때는 엔진의 압축 저항과 마찰 저항을 이겨 낼 큰 회전력, 즉 토크가 필요하다. 감속식 스타터 모터는 감속 기어로 **회전 속도를 낮추는 대신 토크를 크게** 하여 피니언 기어에 동력을 전달한다.

NoteBase

문 7.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공급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LPG봄베 → 솔레노이드 유닛 → 프리히터 → 베이퍼라이저 → 믹서 → 엔진
② LPG봄베 → 솔레노이드 유닛 → 베이퍼라이저 → 프리히터 → 믹서 → 엔진
③ LPG봄베 → 솔레노이드 유닛 → 프리히터 → 믹서 → 베이퍼라이저 → 엔진
④ LPG봄베 → 프리히터 → 솔레노이드 유닛 → 베이퍼라이저 → 믹서 → 엔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솔레노이드 유닛은 봄베에서 나오는 연료의 **공급과 차단**을 제어한다. 이후 LPG를 예열하고 베이퍼라이저에서 **감압·기화한 다음** 믹서에서 공기와 혼합한다.

올바른 순서

LPG봄베 → 솔레노이드 유닛 → 프리히터 → 베이퍼라이저 → 믹서 → 엔진

LPG봄베: LPG를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용기이다. 저장된 연료를 연료공급 계통으로 내보내는 출발점이다.

솔레노이드 유닛: 전자석으로 밸브를 작동시켜 **연료 통로를 열거나 차단**한다. 봄베에서 나온 LPG가 프리히터로 공급되기 전에 연료의 흐름을 제어한다.

프리히터: LPG를 미리 가열하는 예열기이다. LPG가 기화할 때 열이 필요하므로, 베이퍼라이저로 보내기 전에 **기화에 필요한 열을 공급**한다.

베이퍼라이저: 예열된 LPG를 **감압·기화**하고 공급 압력을 조절한다. 믹서가 공기와 혼합할 수 있도록 액체 연료를 기체 상태로 바꾸므로 믹서보다 앞에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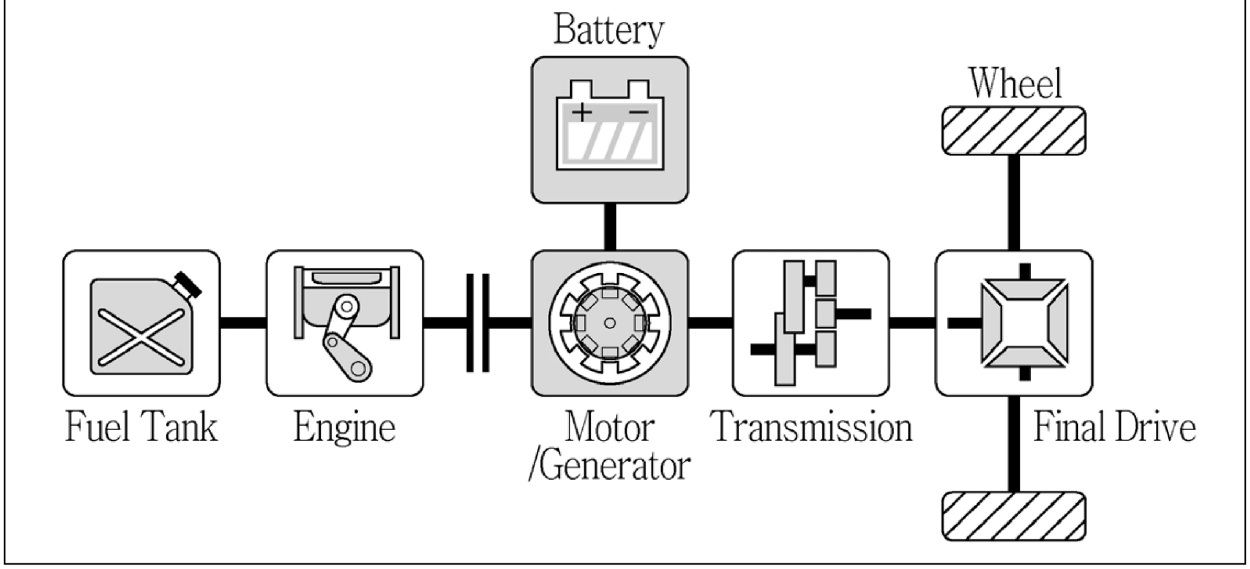
믹서: 베이퍼라이저에서 공급된 기체 LPG를 흡입 공기와 섞어 **혼합기를 형성**한다. 엔진에서 연소시키려면 연료와 공기가 함께 공급되어야 하므로 기화 단계 다음에 위치한다.

엔진: 믹서에서 만들어진 혼합기를 실린더로 흡입하여 압축하고 점화·연소시킨다. 이 연소로 발생한 힘을 동력으로 바꾼다.

NoteBase

문 8. <보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① 내연기관 엔진과 전동·발전기 요소가 필요하다.

② 동력의 제어 및 혼성이 이루어지므로 제어 기술 및 기계장치가 복잡하다.

③ 복수의 동력원을 설치하고, 주행 상태에 따라 한쪽의 동력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④ 직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그림에는 엔진의 회전력이 변속기를 거쳐 바퀴로 전달되는 **기계적 연결 경로**가 있으므로 **병렬형 하이브리드**이다. 직렬형은 엔진이 발전기를 돌리고, 바퀴는 전동기가 구동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림에 내연기관인 Engine과 전동·발전기인 Motor/Generator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 전동·발전기는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구동력을 내거나, 반대로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② O: 엔진과 전동기의 출력을 주행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필요하면 합쳐야 한다. 엔진의 작동, 전동기의 구동·발전, 클러치의 연결 등을 **서로 맞추어 제어**해야 하므로 제어 기술과 기계장치가 복잡하다.

③ O: 엔진과 전동기라는 복수의 동력원을 갖추고, 주행 상태에 따라 한쪽의 동력으로 바퀴를 구동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엔진과 전동기 사이의 클러치를 분리하면 전동기로 구동할 수 있다. 다만 **항상 한쪽 동력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두 동력원의 출력을 함께 이용한다.

④ X: 그림은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엔진과 전동기가 그림에서 나란히 이어져 보이더라도, 엔진의 회전력이 클러치·변속기를 거쳐 바퀴로 전달되는 기계적 경로가 있다. 직렬형은 이러한 엔진과 바퀴 사이의 기계적 연결 없이,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고 전동기로 바퀴를 구동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자동차용 기동전동기 구성 부품 중 회전하는 것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계철과 계자철심 ㄴ. 브러시와 브러시 홀더

ㄷ. 정류자 ㄹ. 마그네틱 스위치

ㅁ. 전기자 ㅂ. 계자코일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ㄷ, ㅁ

④ ㄷ, ㅂ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동전동기에서는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 **전기자**가 회전하며, 전기자축에 결합된 **정류자**도 함께 회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계철과 계자철심: 고정 부분이다. 계철은 기동전동기의 바깥 몸체를 이루며 자기력선의 통로가 되고, 계자철심은 계자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전기자 쪽으로 전달한다. 두 부품 모두 전기자와 함께 회전하지 않는다.

ㄴ. 브러시와 브러시 홀더: 고정 부분이다. 브러시는 회전하는 정류자 표면에 접촉하여 전기자에 전류를 공급하고, 브러시 홀더는 브러시를 지지한다. **정류자는 회전하지만 브러시와 브러시 홀더는 함께 회전하지 않는다.**

ㄷ. 정류자: 회전 부분이다. 정류자는 **전기자축에 결합되어 전기자와 함께 회전**한다. 브러시와 접촉하면서 전기자 코일의 전류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게 한다.

ㄹ. 마그네틱 스위치: 회전하지 않는 부품이다. 전자석의 힘으로 플런저를 움직여 피니언 기어의 맞물림을 돕고, 주접점을 닫아 기동전동기에 큰 전류가 흐르게 한다. 플런저의 운동은 **직선 운동**이므로 전기자의 회전 운동과 구별한다.

ㅁ. 전기자: 회전 부분이다.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계자가 만든 자기장과 상호 작용하여 회전력이 생긴다. 이 힘으로 전기자가 회전하여 엔진을 돌리는 데 필요한 동력을 만든다.

ㅂ. 계자코일: 고정 부분이다. 계자철심에 감겨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만든다. **회전하는 전기자 코일과 달리** 계자코일은 계철 쪽에 고정되어 있다.

회전하는 부품은 ㄷ의 정류자와 ㅁ의 전기자이며, 이 조합은 ③의 ㄷ, ㅁ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자동차 전자제어현가장치(ECS : Electronic Controlled Suspension)의 차량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앤티 스쿼트 제어(anti-squat control) : 급제동할 때 노스다운(nose down)을 방지

② 앤티 롤링 제어(anti-rolling control) : 급커브에서 원심력에 의한 차량 기울어짐을 방지

③ 앤티 바운싱 제어(anti-bouncing control) : 비포장 도로를 운행할 때 쇽업소버(shock absorber)의 감쇠력을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 확보

④ 차속감응 제어(vehicle speed control) : 고속주행 시 쇽업소버(shock absorber)의 감쇠력을 제어하여 주행 안정성 확보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급제동할 때 앞쪽 차체가 숙여지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은 **앤티 다이브 제어**이다. 앤티 스쿼트 제어는 **급가속할 때 뒤쪽 차체가 가라앉는 현상**을 억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앤티 스쿼트 제어는 **급가속할 때 뒤쪽 차체가 가라앉는 현상**을 억제한다. 급제동할 때 앞쪽 차체가 숙여지는 노스다운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은 앤티 다이브 제어이다. 따라서 선지의 제어 명칭을 '앤티 다이브 제어'로 고쳐야 한다.

② O: 급커브를 돌 때에는 차체가 커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롤링이 발생한다. 앤티 롤링 제어는 쇽업소버의 감쇠력을 조절하여 **차체의 좌우 기울어짐**을 억제하고 선회 안정성을 높인다.

③ O: 비포장 도로의 요철을 지나면 차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바운싱이 발생한다. 앤티 바운싱 제어는 쇽업소버의 감쇠력을 조절하여 **차체의 상하 진동**을 억제하고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높인다. 감쇠력은 진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④ O: 차속감응 제어는 차량 속도에 따라 쇽업소버의 감쇠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고속주행 시에는 **감쇠력을 높여 차체의 흔들림을 억제**함으로써 주행 안정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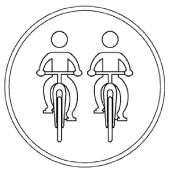
NoteBase

문 11. 안전표지와 그에 대한 설명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

②  미끄러운 도로 표지

③  양측방향 통행 표지

④  자전거 주차장 표지

정답 2번

①

그림은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이다. 적재함이 있는 화물자동차 도안이므로 승합자동차 통행금지표지와 구별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2호 나목 일련번호 203
Ⅱ. 개별기준

2.규제표지

나. 종류별 기준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7D9_2EFy5IxePmQWYJYjH-7NLD1fhb8b.webp

NoteBase

②

자동차 뒤에 굽은 미끄럼 자국이 있는 그림은 **자동차 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곳임을 알리는 미끄러운 도로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1호 나목 일련번호 126
II. 개별기준

1.주의표지

나. 종류별 기준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9AhtMhCZWNCSaGBt1HuPen-3Augj-N1.webp

③

그림은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중앙분리대시작표지**이다. 서로 반대 방향의 화살표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표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1호 나목 일련번호 123
II. 개별기준

1.주의표지

나. 종류별 기준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YZy84lmWURjffK00JF_NrjJ7OPkBo2Ne.webp

NoteBase

④

두 자전거가 나란히 있는 그림은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등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이다. 자전거 주차장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3호 나목 일련번호 333
Ⅱ. 개별기준

3.지시표지

나. 종류별기준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HQomsDcA_Oi5kpaLSFrL3VDUhhhPqlv.webp

NoteBase

문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① 매시 60킬로미터

② 매시 80킬로미터

③ 매시 100킬로미터

④ 매시 120킬로미터

정답 2번

공통 해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④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때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자동차는 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상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차로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④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는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3.27>

NoteBase

문 14.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차되어 있는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②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놀이를 하는 행위

③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④ 돌·유리병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정답 1번

①

금지되는 것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이다. 정차되어 있는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②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나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③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NoteBase

④

돌·유리병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4.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NoteBase

문 15.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②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③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④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정답 3번

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②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NoteBase

③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제한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④

도로의 파손·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NoteBase

문 16.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④ 보조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정답 4번

①

주의표지는 **도로상태나 도로 주변의 위험을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 내용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지시표지는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시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NoteBase

④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주의·규제·지시 내용을 알리는 것은 **노면표시**이다. 보조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4. 보조표지 주의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NoteBase

문 17.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②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장의용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운전 중에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시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번

①

도로를 횡단 중인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실제 도로를 횡단 중이라는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②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자동차의 운전 금지에서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장의용 자동차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NoteBase

③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의 좌우·전후방 확인 보조 영상**은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 ·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NoteBase

문 18.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의 장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인 곳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정답 2번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는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가 주차금지 범위이다. 선지의 10미터는 법정 거리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 ·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주차금지 장소이다. 선지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 명칭인 시 · 도경찰청장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NoteBase

④

도로의 위험 방지와 교통의 안전 ·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은 법정 주차금지 장소이다. 선지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 명칭인 시 · 도경찰청장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3.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NoteBase

문 19.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에는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긴급자동차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이 포함된다.

③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정답 1번

①

자동차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②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NoteBase

③

정차는 **5분 이하의 정지이면서 주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 요건만으로 정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5분 이내라도 주차에 해당하는 정지는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

우마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가축의 교통·운수상 사용 용도**이다. 가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우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NoteBase

문 20. 「도로교통법」상 정비 불량차의 점검 관련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장치의 점검 및 사용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운행 중인 차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우선 정지시킨 후,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NoteBase

③

시·도경찰청장(종전 지방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③ 시 · 도경찰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또는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 조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NoteBase